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053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172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053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각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변론 종결 2017. 12. 20.

판결 선고 2018.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처 C는 원고에게,

2008. 7. 25. "일금 일천만원정. 변제기간 : 2008년 8월 25.일. 이자 : 5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8. 7. 27. "일금 삼천만원정. 변제기간 : 2008년 12월 30.일. 이자 : 5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6. 20. "일금 오천만원. 변제기간 : 2009년 8월 30.일.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내에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2012. 8. 7. C는 원고에게 "금 일억사천육백만원정(146,000,000) 위 금원은 각서인(C) 2008. 7. 25.일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A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금액의 용도는 각서인(C)의 가정과 남편(D) 선거비용으로 소진하기 위에 A로부터 현금을 차용했으며 금일 현재 A에게 갚아야할 금액으로써 각서인은 2012. 10. 15.일까지 갚을 것임을 각서한다. 만약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갚지 않을 경우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을 각서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연대보증인 각서

2014. 3. 5. C는 원고에게 "금액 일억사천육백만원(146,000,000) 위 금액을 2014. 6월 23.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금액을 기일까지 변제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지고 연 20% 이자를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별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한편 이 사건 각서에는 연대보증인 부분에 'B 주민 E 사천시 F건물 G호'라고 수기되어 있고, 위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인 2014. 3. 5.자로 대리 신청에 의해 '경상남도 사천시 H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2016. 8. 5. 공증인가 법부법인 I 증서 2016년 제448호로 채권자 원고로 채무자 C로 하여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8. 7. 25. 금 일억사천육백만(₩146,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6. 9.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2017. 1.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상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2017. 5. 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는 처 C를 이 사건 각서 중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였고, C는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은 2014. 3. 5.로부터 약 1주일 전 무렵에 원고는 C에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남편도 알고 있다고 하였으니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지불각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를 받은 C는 2014. 3. 5. 오후에 원고의 가게로 와 이 사건 각서를 건네주면서 "지불각서에 남편이 연대보증을 썼고, 남편 이름 뒤에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남편이 날인하였고, 인감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처 C가 피고 몰래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를 만들고 이를 피고가 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는 역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1) 첫째, 피고는 평소 자신의 인감을 아내인 C에게 보관시켜두고 있었고, 아내가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부부사이에는 일상의 가사에 대리권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상의 가사대리권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남편인 피고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아내가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또 자신의 인감을 아내에게 보관을 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기본 대리권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이 사건 각서를 보더라도,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가정과 시의원인 남편(B)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내가 이런 용도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고 하면서 남편의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를 주는 것을 받았다면,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직접 인감을 찍어준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내에게 자신의 인감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자로 지정해 주어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3. 피고의 주장

가. C가 원고에게 빌린 돈은 2006.경 3,500만원을 월 5부의 이자로 빌린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원금을 빌린 적은 없고, 원고가 위 월 5부의 이자를 계속 쌓아서 그 원금을 늘려가면서 원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했다.

C는 원고의 채무 변제 협박과 남편인 피고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오던 중 2014. 3. 5.경 원고가 차용금으로 146,000,000원이라고 적은 각서를 피고에게 보여주면서 거의 강제로 차에 태우더니 남편인 피고 본인이 없어도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땔 수 있으니,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요하였고, C는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집에 들러 남편의 인감도장을 찾아 들고 나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대리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원고가 시키는 대로 원고가 적어온 각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각서를 그대로 작성해 주었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차용은 가사대리권의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의 진정성립

이 사건 각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의 인영임은 위에서 보았는데(다툼이 없다), 일응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처인 C를 이 사건 각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C가 그 위조 및 동행사를 인정하여 기소된 사실 역시 위에서 보았는바, 위에서 본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스스로 피고로부터 직접 연대보증인란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C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연대보증인란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라는 증명도 없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C의 필체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원고가 보는 자리에서 C가 연대보증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서 전체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자연스럽다).

또한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상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평소 자신의 인감을 아내인 C에게 보관시켜두고 있었는지, 아내가 인감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게 두었다고 하여 역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어떤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차용한 금원(5부 이자 외에 원금이 원래 얼마인지 알 수 없다)이 실제 가정생활과 남편의 시의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2014. 3. 5. 이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도 피고에게 직접 연대보증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처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를 당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재혁

별지